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의 점용료·사용료 감면〉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82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의 점용료 · 사용료 감면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7일 광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도 상승하게 되므로 해당 토지의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중소·중견 조선사는 빠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조선사보다도 더 많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점용료·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의 점용료·사용료 감면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 ----- ----- ----- ----- ----- ----- -----

·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4. (생략)

<신 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on the page.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기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
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
업이 점용·사용하는 경우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3조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하고 산정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재차 위임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첨부1 참고).

□ 이와 같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점용·사용하는 공유수면의 면적 등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업종의 특성상 넓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기업에는 점용료·사용료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조선업 등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당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은 다른 감면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우려가 있음.

현행법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취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이나 환경보전, 해상안전,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¹⁾이 있고, 단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다른 업종과 달리 보기 어려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다음으로, 현재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낮은 효율이 적용되고 있음.

일반적인 시설에 적용되는 효율은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00분의 3인 반면, 조선용 선가대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일반적 시설 대비 감면 효과를 누리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취지 및 현행 효율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일반적 임대료와 같이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지에 따른 요금 격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²⁾,

지가 급등 시 과도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점용료·사용료 연동 조정 제도도 이미 실시³⁾하고 있어, 지가 급등이 점용료·사용료의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기준 지가가 높은 지역은 산업시설 밀집도, 인프라 수준, 개발가능성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공간 이용 여건이 유리하다는 의견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표] 점용료·사용료 연동 조정 제도

대상	지가상승 등으로 점용료·사용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방법	점용료·사용료 조정 산식 적용 후, 조정된 증가율만큼만 인상하여 착수
적용예시	15%→10.75%, 20%→11.5%, 50%→13% 등

문 의 처

02)6788-5418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10.	(생략)